

국 민 평 생 직 업 능 력 개 발 법
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

2023. 3.

고 용 노 동 부
(직업능력정책과)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교육·훈련·자격·경력 등을 통해 취득한 직무능력정보를 개인별로 저축·통합 관리하여 취업·직업능력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직무능력은행제 구축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기준에 성폭력범죄 추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이 개정(법률 제19174호, 2023. 1. 3. 공포, 7. 4. 시행)됨에 따라 직무능력계좌 및 직무능력 인정서의 발급 절차, 직무능력의 인정 및 인정 취소의 세부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직무능력은행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직무능력계좌 발급 절차(안 제9조 및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)

직무능력계좌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통해 계좌 발급을 신청하도록 하고, 신청과 함께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.

나. 직무능력의 인정기준(안 제9조의2 및 별표 3의2 신설)

직무능력의 인정에 대한 유형별 세부 기준으로 별표 3의2를 신설하고,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직무능력은 직무능력 인정서에 국가직무능력표준 능력단위를 함께 기재함.

다. 직무능력 인정서 발급(안 제9조의3 및 별지 제4호의3서식 신설)

직무능력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이 인정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직무

능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직무능력 인정서를 발급하며, 직무능력 인정서 서식으로 별지 제4호의3서식을 신설함.

라. 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교과 인정(안 제9조의4 및 별지 제4호의4·제4호의5서식 신설)

직무능력은행제에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대학 교육과정 정보가 연계될 수 있도록 대학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교육과정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인정하고, 이에 필요한 절차,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.

마. 직무능력의 인정 취소 기준(안 제9조의5 및 별표 3의3 신설)

직무능력의 인정 취소 세부 기준으로 별표 3의3을 신설함.

바.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기준 변경(안 별표 4 개정)

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인 별표 4를 개정함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. . ~ . .)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

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,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직무능력계좌 발급 절차) ① 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직무능력계좌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직무능력정보시스템(이하 “직무능력정보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통해 계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직무능력계좌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의2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의2(직무능력의 인정 기준 등)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직무능력의 인정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.

② 제1항에 따라 인정되는 직무능력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자격·교육·훈련·경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능력 인정서에 국가직무능력표준 능력단위를 함께 기재한다.

제9조의3(직무능력 인정서 발급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능력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이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인정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에게 직무능력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.

② 직무능력 인정서 서식은 별지 제4호의3서식과 같다.

제9조의4(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교과 인정) ① 공단은 「고등교육법」

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교육과정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인정(이하 “교과 인정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과 인정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준, 대상, 절차, 방법 등 교과 인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교과 인정 신청서 접수 시작일의 1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교과 인정을 받으려는 대학은 별지 제4호의4서식의 교과 인정 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교과 인정을 신청한 대학의 교육과정이 공고에 따른 인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5서식의 교과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⑤ 교과 인정의 유효기간은 교과 인정을 받은 날의 다음 해부터 3년으로 한다.

제9조의5(직무능력의 인정 취소 기준)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직무능력 인정 취소의 세부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.

별표 3의2 및 별표 3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표 4 위반행위의 제2호 중 “제4호”를 “제5호”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“제52조제2항제5호의2”를 “제52조제2항제5호의

4”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중 “제52조제2항제5호의2”를 “제52조제2항제5호의4”로
한다.

별지 제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
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직무능력의 인정 기준(제9조의2 관련)

개인이 습득한 자격·교육·훈련 및 경력으로서 다음 각 사항을 직무능력으로 인정한다.

인정 유형	인정되는 직무능력
자격 정보	1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검정형 자격 또는 교육·훈련과정 이수 및 평가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과정평가형 자격 2. 「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일학습병행자격 3. 「군인사법」에 따른 국방자격
교육 이수 정보	1.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 고등학교의 전공 일반 및 전공 실무 과목 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중 공단의 심사를 통해 교과 인정을 받은 교육과정 3. 법 제39조에 따른 기능대학 중 공단의 출연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이나 학위전공심화과정 4.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학습계좌 학습과정 중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
훈련 이수 정보	1. 법 제18조 및 법 제2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2.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 3. 「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일학습병행 훈련 4. 법 제39조에 따른 기능대학 중 공단의 출연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기능대학의 직업훈련 5.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으로 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통해 개인별 훈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
경력 정보	1.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이력 2. 「군인사법 시행규칙」 제87조에 따른 군 직무능력 관련 경력 3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 또는 「소득세법」 제168조에 따른 개인 사업자등록 이력
기타	그 밖에 자격·교육·훈련·경력정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직무능력으로 인정하는 정보

직무능력의 인정 취소 기준(제9조5 관련)

위반행위	근거조문	처분기준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	법 제26조제3항 제1호	인정 취소
2.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정 이후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인정의 기초가 된 중요한 사항이 달라진 경우	법 제26조제3항 제2호	
가.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「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2호를 위반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		인정 취소
나.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이 정지된 경우		자격정지 기간 동안 불인정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“√” 표시를 합니다.

■ 개인이 자격·교육·훈련·경력 등을 통해 취득한 직무능력정보를 저축·통합관리하여 취업·직업능력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및 제공합니다.

■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동의(필수)

항 목	수집·이용 목적	보유기간
성명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전자우편주소, 회원 계정 정보(ID, 비밀번호), 회원가입 동의 여부	- 개인별 직무능력계좌 발급·관리 - 개인별 직무능력정보 관리 - 직무능력 인정서 발급	5년 회원탈퇴 시
※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 거부 시 직무능력계좌 발급 등 관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.		
위 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하십니까? ([] 예, [] 아니오)		

■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제3자 제공 동의(필수)

제공받는자	개인정보 제공목적	개인정보 제공 항목	보유 및 이용기간
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5조 제4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, 관계행정기관장등과 관련 기관·단체의 장	-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·관리·제공 - 개인별 직무능력정보 관리 - 직무능력 인정서 발급	- 성명, 주민등록번호 - 「국가기술자격법」, 「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나 그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취득 정보 - 「직업교육훈련 촉진법」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정보 -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소속 사업장, 피보험자격 취득·상실일 등 가입 이력에 관한 정보 - 개인별로 취득한 「군인사법」에 따른 국방자격 및 군 직무능력 관련 정보 -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 또는 「소득세법」 제168조에 따른 개인 사업자등록정보 - 그 밖에 법 제25조제3항 각 호에 준하는 정보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 정보 등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체계적·종합적인 제공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	5년 회원탈퇴 시
※ 위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 거부 시 직무능력계좌 발급 등 관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.			
위 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? ([] 예, [] 아니오)			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 귀하

직무능력 인정서

성 명 :
생년월일 :

위 사람은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」 제26조에 따라 아래의 직무능력을 갖추었음을 인정합니다.

■ 자격

연번	취득 방법	자격명 (등급)	발급 기관	취득 일자	NCS 직무능력 정보		기타
					NCS 분류 (대-중-소-세분류)	능력단위명 (능력단위 코드)	

■ 훈련

연번	훈련 유형	과정명	훈련 기관	훈련 기간	NCS 직무능력 정보		기타
					NCS 분류 (대-중-소-세분류)	능력단위명 (능력단위 코드)	

■ 교육

연번	교육 유형	과정명	교육 기관	교육 기간	NCS 직무능력 정보		기타
					NCS 분류 (대-중-소-세분류)	능력단위명 (능력단위 코드)	

■ 경력

(1) 고용보험 가입 이력

연번	사업장 명칭	업종	피보험자격 취득 기간	근로 · 노무제공일수

※ 근로 · 노무제공일수는 일용근로자 · 단기 예술인 · 노무제공자의 경우에 한함

(2) 개인 사업자등록 이력

연번	상호	등록번호	사업 업태	사업 종목	개업일	폐업일

(3)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군 복무경력

연번	소속	직책	군무 기간	NCS 직무능력 정보	
				NCS 분류 (대-중-소-세분류)	능력단위명 (능력단위 코드)

※ 국가직무능력표준 능력단위에 관한 내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 누리집(<http://www.ncs.go.kr>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년 월 일

고 용 노 동 부

※ 본 직무능력 인정서는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」 제52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확인 · 발급합니다.

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

직인

국가직무능력표준(NCS) 기반 교과 인정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		
학 교 명	학과(부)/ 전공명	입학정원 (년도)		
소재지 주소				
담당자 성명	담당자 이메일 주소			
담당자 연락처	(사무실)	(휴대전화)		
인정신청 교과내역	교과명	신청 능력단위(능력단위코드)	교과 운영시기	

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(NCS) 기반 교과 인정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학교 대표자)

○○대학교 총장

(직 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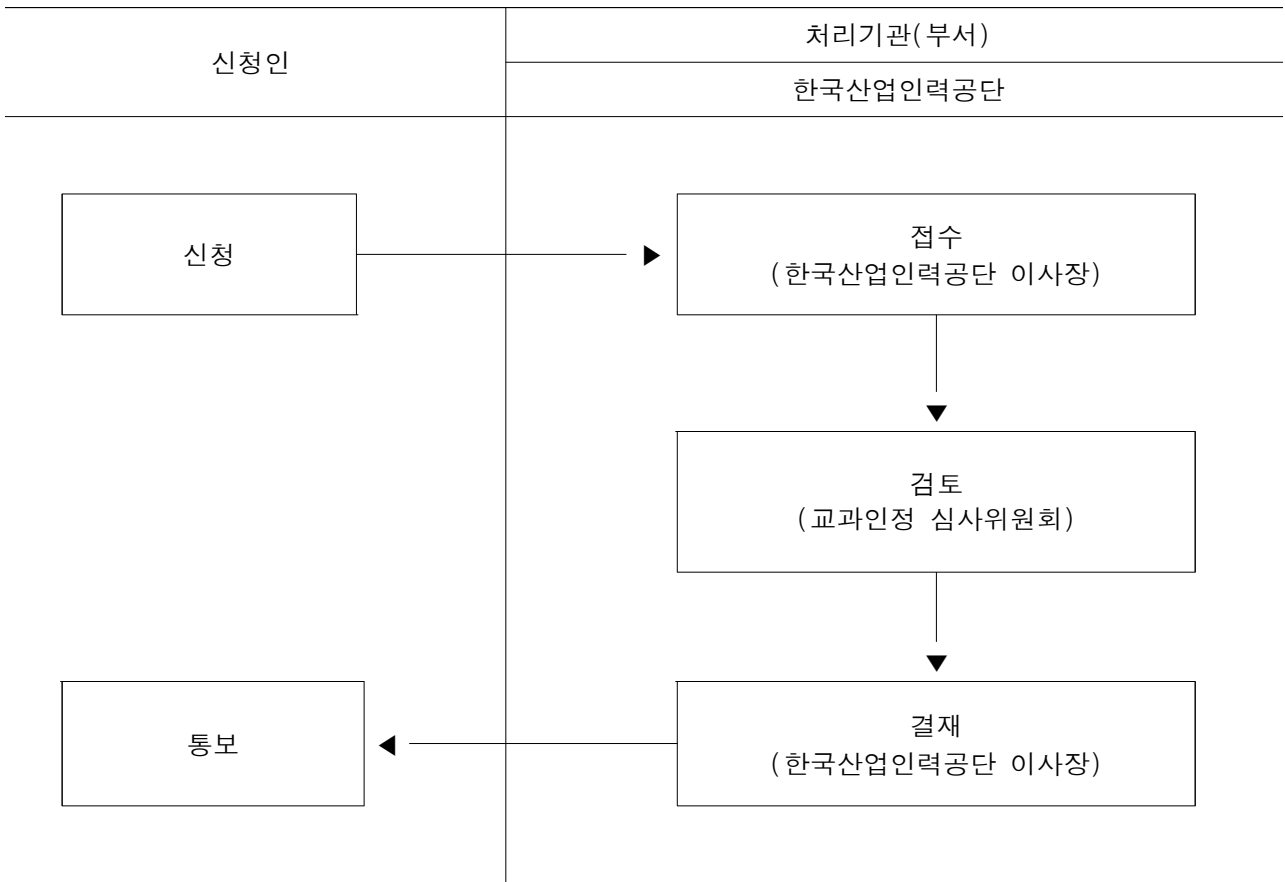
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

첨부서류	1. 교과별 운영계획서 각 1부 2. 교과별 평가계획서 각 1부 3. 교재 목차 사본 등 그 밖에 첨부서류(필요시)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210mm×297mm(백상지 80g/㎡)

처리절차

※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210mm×297mm(백상지 80g/㎡)

국가직무능력표준(NCS) 기반 교과 인정서

학교명		학과(부)/전공명	
주소			

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4항에 따라 상기 대학 학과(부)/전공은 국가직무능력표준(NCS)에 기반한 교과를 아래와 같이 설계·운영하고 있음을 인정함.

교과 인정 내역				
연번	교과명	학점(시수)	능력단위명(코드)	인정 유효기간

년 월 일

고 용 노 동 부 장 관

※ 본 NCS 기반 교과 인정서는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」 제52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확인·발급합니다.

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

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9조(직무능력계좌 발급 절차)</u> ① 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직무능력계좌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직무능력정보시스템(이하 “직무능력정보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통해 계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라 직무능력계좌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<u><신 설></u>	<u>제9조의2(직무능력의 인정 기준 등)</u>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직무능력의 인정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. ② 제1항에 따라 인정되는 직무능력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자격·교육·훈련·경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능력 인정서에 국가직무능력표준 능력단위를 함께 기재한다.
<u><신 설></u>	<u>제9조의3(직무능력 인정서 발급)</u>

<신 설>

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능력
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이 법 제2
6조제4항에 따라 인정서 발급을
신청하는 경우 직무능력정보시
스템을 통해 신청자에게 직무능
력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.

② 직무능력 인정서 서식은 별
지 제4호의3서식과 같다.

제9조의4(대학 교육과정에 대한
교과 인정) ① 공단은 「고등교
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
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에서
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대상으로
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교
육과정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
여 인정(이하 “교과 인정”이라
한다)할 수 있다.

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과
인정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
기준, 대상, 절차, 방법 등 교과
인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
정하여 교과 인정 신청서 접수
시작일의 1개월 전까지 공고하
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교과 인정을
받으려는 대학은 별지 제4호의4

<신 설>

서식의 교과 인정 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교과 인정을 신청한 대학의 교육과정 이 공고에 따른 인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5서식의 교과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⑤ 교과 인정의 유효기간은 교과 인정을 받은 날의 다음 해부터 3년으로 한다.

제9조의5(직무능력의 인정 취소 기준)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직무능력 인정 취소의 세부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7270